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 정책·기획 기능 강화 및 교류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 교류협력국을 폐지하고 통일부 교류협력실과 교류협력실장 밑에 교류협력정책관 및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8명을 통일부 소속기관에서 통일부로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남북관계와 관련된 법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통일법제지원팀을 설치하고, 정책협력과와 교류협력기획과의 명칭을 각각 소통협력과와 교류총괄과로 변경하며, 개방형 직위로 교류협력정책관을 확대 지정하고, 소속기관의 공통 지원업무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해당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을 그에 따라 변경하며, 이와 관련하여 본부 및 해당 소속기관의 정원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정보화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 및 통일법제지원팀장”으로, “보고,”를 “,”로, “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서기관으로, 통일법제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6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3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통일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2.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3.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4.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5.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6. 남북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7.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8.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제6조제2항 중 “정책협력과”를 “소통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9호 중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정책”을 “접경지대에서의 평화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협력과장”을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류협력실) ① 교류협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교류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류협력실에 교류총괄과·남북경협과·사회문화교류정책과·사회문화교류운영과·남북접경협력과·개발지원협력과·교류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추진
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추진

5.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종합 및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의 운용
7.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9.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1.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대북 협상전략 수립 등 남북간 협의 지원
12.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유관국 및 국제기구 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3.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1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획 및 조정
15.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  
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16.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17. 국내 예산·국회·홍보·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8.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남북경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  
원[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5.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6.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7.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8.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의 대북협力の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9.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0.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종합 및 지원
12.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13.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14.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15.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16.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7.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 관련 업무
18.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⑤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분야 등의 교류협력(이하 “사회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2. 사회분야 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3.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사회분야 교류협력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5.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6.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7. 사회분야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0.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2.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에 대한 사후관리
13.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 유지

⑥ 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예술, 관광(경제협력사업 제외),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 분야 등의 문화분야 교류협력(이하 “문화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2. 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3.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문화분야 교류협력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5.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6.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7. 문화분야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0.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2.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에 대한 사후관리

13.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 유지

⑦ 남북접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정부차원의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의 수립·시행 및 사후 관리
5. 민간단체 등의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6.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7.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8.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협력사업의 승인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9.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지원 및 관리
11.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2.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3.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 ⑧ 개발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정부차원의 개발지원협력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후 관리
  5.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개발지원협력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6.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7.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8.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9. 개발지원협력 분야 협력사업 승인 및 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10.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1.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지원 및 관리
  12.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3.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⑨ 교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 반·출입 관리의 지원 총괄
2.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3.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의 운용
4.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과의 협조
5.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
6. 남북한 간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7.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8. 남북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9.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10.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11. 남북교류협력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제10조 중 “정치·군사 분야를 담당하는 상근회담대표는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경제·사회문화분야를 담당하는 상근회담대표는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를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회담지원과·회담협력과 및 남북연락과”를 “회담지원과 및 회담운영연락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담

협력과장”을 “회담운영연락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2. 남북 간 판문점 연락업무의 종합·조정
13. 판문점지역 및 기타 남북회담·교류행사 관련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14. 판문점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15.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16.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17.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18.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운용
19.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20.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21. 내외국인의 판문점 견학 및 방문의 주선

제19조의2제2항 중 “교육기획팀, 교육훈련팀”을 “교육운영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기획팀장과 교육훈련팀장”을 “교육운영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기획팀장”을 “교육운영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10호 중 “수립”을 각각 “수립 및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12.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초빙

13.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14.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15.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16.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제19조의3제2항 본문 중 “출입총괄과·경의선운영”을 “경의선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입총괄과장”을 “경의선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2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16. 경의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17.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18.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19.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20.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확인 등 민원사무

21.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22. 경의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23. 경의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24. 경의선 열차 차량 운행을 위한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25. 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26.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제20조의4제2항 중 “기획과·교류운영”을 “기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획과장 및 교류운영과장”을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과장”을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10. 남북 청소년교류 관련 사업 추진

11. 통일체험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2. 세대 및 계층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3. 남북 인적 교류 등 센터 행사 지원

14. 지역연계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운영

15. 통일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및 관리

16. 청소년지도사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의 관리

제23조제1항 중 “경제·사회문화분야를 담당하는”을 “교류협력정책관, 남북회담본부”로 한다.

별표 1 총계 “243”을 “261”로 하고, 일반직 계 “239”를 “25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8”을 “9”로 하고, 서기관 “11”을 “1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6”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4”를 “25”로 하며, 행정사무관 “68”을 “71”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를 “6”으로 하며, 행정주사 “23”을 “27”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를 “1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10”을 “12”로 하고, 행정서기보 “2”를 “3”으로 한다.

별표 1의2 총계 “243”을 “261”로 하고, 일반직 계 “239”를 “25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8”을 “9”로 하고, 서기관 “10”을 “12”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6”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0”을 “31”로 하며, 행정사무관 “64”를 “67”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를 “6”으로 하며, 행정주사 “21”을 “25”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를 “1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10”을 “12”로 하고, 행정서기보 “2”를 “3”으로 한다.

별표 2 총계 및 일반직 계 “75”를 각각 “72”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5”를 각각 “4”로 하며, 행정주사 “10”을 “9”로 한다.

별표 4 총계 “101”을 “96”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00”을 각각 “95”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

사무관 “4”를 “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9”를 “8”로 하며, 행정주사 “26”을 “23”으로 한다.

별표 5 총계 및 일반직 계 “30”을 각각 “25”로 하고, 서기관 “2”를 “1”로 하며, 행정사무관 “5”를 “4”로 하고, 행정주사 “4”를 “3”으로 하며,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을 “2”로 하고, 행정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7의3 총계 및 일반직 계 “27”을 각각 “22”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및 행정사무관 “2”를 각각 “1”로 하며, 행정주사 “7”을 “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8”을 “6”으로 한다.

별표 7의4 총계 및 일반직 계 “28”을 각각 “23”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및 행정사무관 “2”를 각각 “1”로 하며, 행정주사 “7”을 “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9”를 “7”로 한다.

별표 9 제1호에 교류협력실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교류협력실장 | 1명<br>(고위공무원단 가<br>등급 1명) | 2022년 9월 30일까지 |
|--------|---------------------------|----------------|

별표 9 제1호에 교류협력실 교류협력정책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교류협력실 교류협력정책관 | 1명<br>(고위공무원단 나<br>등급 1명) | 2022년 9월 30일까지 |
|---------------|---------------------------|----------------|

별표 9 제1호에 교류협력실 사회문화교류운영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교류협력실 사회문화교류운영과 | 1명<br>(4급 1명) | 2022년 9월 30일까지 |
|-----------------|---------------|----------------|

별표 9 제1호에 교류협력실 남북접경협력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교류협력실 남북접경협력과 | 1명<br>(4급 1명) | 2022년 9월 30일까지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통일법제지원팀은 2023년 1월 1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통일법제지원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통일법제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보좌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의3(기획조정실장) ① (생략)                                                                                                                                             | 제2조의3(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u>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u>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u>보하고</u> ,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u>서기관으로 보한다</u> . | ② ----- <u>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 및 통일법제지원팀장</u> -----<br>-----<br>-----<br>-----, -----<br>----- <u>서기관으로, 통일법제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④ -----<br>-----<br>---                                                                                                                                      |
| 1. ~ 15. (생략)                                                                                                                                                    | 1. ~ 15. (현행과 같음)                                                                                                                                            |
| 14. · 15. (생략)                                                                                                                                                   | 14. · 15. (현행과 같음)                                                                                                                                           |
| 16. <u>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 · 조정</u>                                                                                                                       | <u>&lt;삭 제&gt;</u>                                                                                                                                           |
| 17. <u>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u>                                                                                                                                         | <u>&lt;삭 제&gt;</u>                                                                                                                                           |
| 18. <u>남북합의서의 체결 ·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 조정</u>                                                                                                                      | <u>&lt;삭 제&gt;</u>                                                                                                                                           |
| 19. <u>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u>                                                                                                                                        | <u>&lt;삭 제&gt;</u>                                                                                                                                           |

의 검토

20.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21.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22.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

의 총괄

23. (생략)

2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처리

25. ~ 27. (생략)

⑤ · ⑥ (생략)

<신설>

<삭제>

<삭제>

<삭제>

10. (현행 제23호와 같음)

<삭제>

11. ~ 13. (현행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와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통일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 · 조정

2.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3. 남북합의서의 체결 ·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 조정

4.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5.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6. 남북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7.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8.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

제6조(통일정책실) ① (생략)

②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 · 정책기획과 · 평화정책과 · 국제협력과 및 정책협력과를 둔다.

③ ~ ⑤ (생략)

⑥ 평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정책의 수립 · 추진

⑦ (생략)

⑧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의 총괄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제6조(통일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소통협력과-----.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8. (현행과 같음)

9. -----  
----- 접경지대에서의 평화 증진을 위한 정책-----

⑦ (현행과 같음)

⑧ 소통협력과장-----  
-----.

1. ~ 9. (현행과 같음)

제7조(교류협력실) ① 교류협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교류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  
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류협력실에 교류총괄과 ·  
남북경협과 · 사회문화교류정책  
과 · 사회문화교류운영과 · 남북  
접경협력과 · 개발지원협력과 ·  
교류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  
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 · 추진
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분  
석 및 평가
3.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 · 시행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 추진
5.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  
종합 및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의 운용
7.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9.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  
본계획 수립 및 운영

11.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대  
북 협상전략 수립 등 남북간  
협업 지원

12.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  
관, 법인, 단체, 유관국 및 국  
제기구 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3.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국  
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련 사  
항

1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기획 및 조정

15.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  
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  
정·승인 및 지원

16.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  
력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반  
입 승인

17. 국내 예산·국회·홍보·서  
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8.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남북경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  
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추진

2.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  
제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  
인 및 지원[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와 관  
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  
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  
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  
획·조정·승인 및 지원(남북  
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  
외한다)

5.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  
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남북협

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6.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 정명령

7.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실무회 담 대책의 수립

8.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의 대북 협의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9.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0.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종합 및 지원

12.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13.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 업무 취급기관 지정

14.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15.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  
심사공무원 지정

16.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  
도 · 감독

17.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제도 관련 업무

18. 남북한 간 교역 · 수송 및 경  
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  
력체계 구축

⑤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분야 등의 교류협력  
(이하 “사회분야 교류협력”이  
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  
립 · 추진

2. 사회분야 교류협력 관련 현  
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 · 시행

3.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  
획

4. 사회분야 교류협력의 기획 ·  
조정 · 승인 및 지원

5.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  
원

6.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7. 사회분야 남북협력사업을 하  
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  
정조사 및 조정명령

8.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한 지  
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0.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  
된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  
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2.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  
된 북한방문자에 대한 사후관  
리

13. 사회분야 교류협력과 관련  
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  
계 유지

⑥ 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예술, 관광(경제협력사업 제외),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 분야 등의 문화분야 교류협력(이하 “문화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2. 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3.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문화분야 교류협력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5.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6.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7. 문화분야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0.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2.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에 대한 사후관리

13. 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 유지

⑦ 남북접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정부차원의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의 수립·시행 및 사후 관리

5. 민간단체 등의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6.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7.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8.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협력사업의 승인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9.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지원 및 관리
11.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2.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

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  
에 관한 사항

13.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  
용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  
축

⑧ 개발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정부차원의 개발지원협력 사  
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후  
관리

5.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개  
발지원협력사업에 대한 기획  
· 조정·승인 및 지원

6.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  
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7.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물자  
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8.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  
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9. 개발지원협력 분야 협력사업

승인 및 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  
정명령

10.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  
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1.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민  
간단체에 대한 협력·지원 및  
관리

12.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동향  
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3.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기  
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⑨ 교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  
북지원과 관련된 물자 반·출  
입 관리의 지원 총괄

2.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3.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  
련된 법령 및 고시의 운용

4.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  
된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  
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제7조 (생 략)

제8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류협력국에 교류협력기획과·남북경협과·사회문화교류과 및 개발지원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류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

5.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

6. 남북한 간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7.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8. 남북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9.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10.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11. 남북교류협력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삭 제>

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추진

4.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종합 및 지원

5.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의 운용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7. 남북한 간 교류협력 관련 법  
· 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9.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의 이행에 관한 사항

11.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12. 남북관계 관련 통계 관리

1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1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15. 남북교류협력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16. 국내 예산·국회·홍보·사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남북경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5.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6.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7.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8.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의 대북 협의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9.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0.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

에 관한 사항

11.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종합 및 지원
12.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13.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  
업무 취급기관 지정
14.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15.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  
심사공무원 지정
16.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  
도·감독
17. 삭 제
18.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19.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  
련된 법령 및 고시의 운용
20.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  
련된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  
조
21.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  
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
22.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제도 관련 업무
23. 남북한 간 교역, 수송 및 경

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  
력체계 구축

24.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  
련 정책의 수립·추진

⑤ 사회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사회·교육·학술  
· 언론·관광·방송·노동·  
문화·예술·출판·종교·체  
육·청소년·여성분야 등의  
교류협력(이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  
된 정책의 수립·추진

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  
행

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  
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  
는 기획

4.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기  
획·조정·승인 및 지원

5.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  
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  
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6.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

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 · 반입  
승인

7. 사회문화분야 남북협력사업  
자에 대한 지도 · 감독 · 행정  
조사 및 조정명령

8.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  
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  
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  
책의 수립

10.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업 · 단체에 대한 지  
원 및 협조

11.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에 대한 사  
후관리

1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동향의 종합 · 분석 및  
통계 유지

1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기획 및 조정

15.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  
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 · 왕래에 대한 기획 · 조정 · 승인 및 지원

16.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 · 반입 승인

⑥ 삭 제

⑦ 개발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정부차원의 개발지원협력 사업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사후 관리

5.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개발지원협력사업에 대한 기획 · 조정 · 승인 및 지원

6.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 · 왕래에 대한 기획 · 조정 · 승인 및 지원

7.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 · 반입 승인

8.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

|                                                                                                                                                                                                                                                                                                                                                                                                                                                                                                                                                                                                                                                                                                           |                                                                                                                                   |
|-----------------------------------------------------------------------------------------------------------------------------------------------------------------------------------------------------------------------------------------------------------------------------------------------------------------------------------------------------------------------------------------------------------------------------------------------------------------------------------------------------------------------------------------------------------------------------------------------------------------------------------------------------------------------------------------------------------|-----------------------------------------------------------------------------------------------------------------------------------|
| <p><u>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u></p> <p><u>9. 개발지원협력 분야 협력사업</u></p> <p><u>승인 및 협력사업자에 대한</u></p> <p><u>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u></p> <p><u>정명령</u></p> <p><u>10.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u></p> <p><u>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u></p> <p><u>11.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민</u></p> <p><u>간단체에 대한 협력·지원 및</u></p> <p><u>관리</u></p> <p><u>12.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동향</u></p> <p><u>의 분석 및 통계 유지</u></p> <p><u>13.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기</u></p> <p><u>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u></p> <p><u>마련에 관한 사항</u></p> <p>제10조(상근회담대표) 남북회담본<br/>부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br/>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br/>보하되, <u>정치·군사 분야를 담</u><br/><u>당하는 상근회담대표는 그 직위</u><br/><u>의 직무등급을 가등급으로 하</u><br/><u>고, 경제·사회문화분야를 담당</u><br/><u>하는 상근회담대표는 그 직위의</u><br/><u>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u></p> <p>제12조(회담운영부) ① (생 략)</p> | <p>제10조(상근회담대표) -----<br/>-----<br/>-----<br/>----- <u>그 직위의 직무등급은</u><br/><u>나등급으로 한다.</u></p> <p>제12조(회담운영부) ① (현행과<br/>같음)</p> |
|-----------------------------------------------------------------------------------------------------------------------------------------------------------------------------------------------------------------------------------------------------------------------------------------------------------------------------------------------------------------------------------------------------------------------------------------------------------------------------------------------------------------------------------------------------------------------------------------------------------------------------------------------------------------------------------------------------------|-----------------------------------------------------------------------------------------------------------------------------------|

② 회담운영부에 회담지원과 · 회담협력과 및 남북연락과를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  
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  
다.

③ (생 략)

④ 회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회담지원과 및  
회담운영연락과-----

-----  
-----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담운영연락과장-----  
-----.

1. ~ 11. (현행과 같음)

12. 남북 간 판문점 연락업무의  
종합 · 조정

13. 판문점지역 및 기타 남북회  
담 · 교류행사 관련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14. 판문점 남북직통전화의 운  
용

15.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16.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17.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18.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  
신망 등의 관리 · 운용

19.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  
안 통제

20. 남북회담 · 접촉 · 교류 등과

<신 설>

⑤ 남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 간 판문점 연락업무의 종합·조정
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 업무의 수행
3. 판문점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4.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5.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6.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7.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운용
8.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9.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10. 내외국인의 판문점 견학 및 방문의 주선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21. 내외국인의 판문점 견학 및 방문의 주선

<삭 제>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 화천분소) ① (생 략)

② 화천분소에 교육기획팀, 교육훈련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③ 교육기획팀장과 교육훈련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  
계획 수립

3. ~ 9. (생 략)

1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재교육  
기본계획 수립

11. (생 략)

<신 설>

<신 설>

사무소 화천분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교육운영팀 -----  
-----  
--.

③ 교육운영팀장-----  
-----  
-----  
-----  
-----  
-----.

④ 교육운영팀장-----  
-----.

1. -----  
----- 수립 및 시행

2. -----  
-- 수립 및 시행

3. ~ 9. (현행과 같음)

10. -----  
-----  
----- 수립 및 시행

11. (현행과 같음)

12.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초빙

13.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신 설>

<신 설>

<신 설>

⑤ 교육훈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3.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초빙

4.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6.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재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⑥ (생략)

제19조의3(남북출입사무소) ① (생략)

② 남북출입사무소에 출입총괄과·경의선운영과 및 동해선운

14.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15.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16.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삭 제>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9조의3(남북출입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의선운영  
-----

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선운영과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로 하고, 동해선운영과장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장으로 한다.

③ 출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  
-----  
-----  
-----  
-----.

③ 경의선운영과장-----  
-----.

1. ~ 15. (현행과 같음)

16. 경의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17.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18.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19.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20.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 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6. (생 략)

④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의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

· 확인 등 민원사무

21.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22. 경의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23. 경의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24. 경의선 열차 차량 운행을 위한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25. 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26.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27. (현행 제16호와 같음)

<삭 제>

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  
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4.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  
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  
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5.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  
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  
확인 등 민원사무

6.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7. 경의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8. 경의선 열차·차량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9. 경의선 열차 차량 운영을 위  
한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10. 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11.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0조의4(한반도통일미래센터)

① (생략)

② 센터에 기획과·교류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③ 기획과장 및 교류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20조의4(한반도통일미래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획운영-----  
-----.

③ 기획운영과장-----  
-----  
-----  
-----.  
-----  
-----  
-----  
-----  
-----  
-----  
-----  
-----.

④ 기획운영과장-----  
-----.

1. ~ 9. (현행과 같음)

10. 남북 청소년교류 관련 사업 추진

11. 통일체험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2. 세대 및 계층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                                                                                                                                                                                                                    |
|-----------------------------------------------------------------------------------------------------------------------------------------------------------------------------------------------------------------------------------------------------------------------------------------------------------------------------------------------------------------------------------------------------------------------|--------------------------------------------------------------------------------------------------------------------------------------------------------------------------------------------------------------------|
|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⑤ 교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남북 청소년교류 관련 사업 추진</p> <p>2. 통일체험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p> <p>3. 세대 및 계층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p> <p>4. 남북 인적 교류 등 센터 행사 지원</p> <p>5. 지역연계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운영</p> <p>6. 통일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및 관리</p> <p>7. 청소년지도사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의 관리</p> <p>⑥ (생 략)</p> <p>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p> | <p>13. 남북 인적 교류 등 센터 행사 지원</p> <p>14. 지역연계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운영</p> <p>15. 통일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및 관리</p> <p>16. 청소년지도사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의 관리</p> <p><u>&lt;삭 제&gt;</u></p> <p>⑤ (현행 제6항과 같음)</p> <p>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p> |
|-----------------------------------------------------------------------------------------------------------------------------------------------------------------------------------------------------------------------------------------------------------------------------------------------------------------------------------------------------------------------------------------------------------------------|--------------------------------------------------------------------------------------------------------------------------------------------------------------------------------------------------------------------|

|                                                                                                                              |                                                                                                                      |
|------------------------------------------------------------------------------------------------------------------------------|----------------------------------------------------------------------------------------------------------------------|
| <p>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u>경제·사회문화분야를 담당하는 상근회담대표,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및 통일교육원장을 말한다.</u></p> <p>②·③ (생략)</p> | <p>① -----<br/>-----<br/>----- <u>교류협력</u><br/><u>정책관, 남북회담본부</u> -----<br/>-----<br/>-----.</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계                                                     | <u>243</u> | <u>261</u> | +18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239</u> | <u>257</u> | +18 |
| 고위공무원단                                                 | <u>8</u>   | <u>9</u>   | +1  |
| ·                                                      | ·          | ·          |     |
| 서기관                                                    | <u>11</u>  | <u>13</u>  | +2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u>5</u>   | <u>6</u>   | +1  |
| ·                                                      |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u>24</u>  | <u>25</u>  | +1  |
| 행정사무관                                                  | <u>68</u>  | <u>71</u>  | +3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u>4</u>   | <u>6</u>   | +2  |
| ·                                                      | ·          | ·          |     |
| ·                                                      | ·          | ·          |     |

|                                               |           |           |    |
|-----------------------------------------------|-----------|-----------|----|
| 행 정 주 사                                       | <u>23</u> | <u>27</u> | +4 |
| ·                                             | ·         | ·         |    |
| 행 정 주 사 · 공 업 주 사 · 시 설 주 사<br>또는 방 송 통 신 주 사 | <u>12</u> | <u>13</u> | +1 |
| ·                                             | ·         | ·         |    |
| ·                                             | ·         | ·         |    |
| 행 정 주 사 보                                     | <u>10</u> | <u>12</u> | +2 |
| ·                                             | ·         | ·         |    |
| ·                                             | ·         | ·         |    |
| 행 정 서 기 보                                     | <u>2</u>  | <u>3</u>  | +1 |
| ·                                             | ·         | ·         |    |
| ·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계                                                     | <u>243</u> | <u>261</u> | +18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239</u> | <u>257</u> | +18 |
| 고위공무원단                                                 | <u>8</u>   | <u>9</u>   | +1  |
| ·                                                      | ·          | ·          |     |
| 서기관                                                    | <u>10</u>  | <u>12</u>  | +2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u>5</u>   | <u>6</u>   | +1  |
| ·                                                      |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u>30</u>  | <u>31</u>  | +1  |
| 행정사무관                                                  | <u>64</u>  | <u>67</u>  | +3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u>4</u>   | <u>6</u>   | +2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                                                   | <u>21</u>  | <u>25</u>  | +4  |

|                                 |           |           |    |
|---------------------------------|-----------|-----------|----|
| ·                               |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br>또는 방송통신주사 | <u>12</u> | <u>13</u> | +1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보                           | <u>10</u> | <u>12</u> | +2 |
| ·                               | ·         | ·         |    |
| ·                               | ·         | ·         |    |
| 행정서기보                           | <u>2</u>  | <u>3</u>  | +1 |
| ·                               | ·         | ·         |    |
| ·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남북회담본부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계           | <u>75</u> | <u>72</u> | -3  |
| 일반직 계        | <u>75</u> | <u>72</u> | -3  |
| 고위공무원단       | <u>5</u>  | <u>4</u>  | -1  |
| ·            | ·         | ·         |     |
|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u>5</u>  | <u>4</u>  | -1  |
| ·            | ·         | ·         |     |
| 행정주사         | <u>10</u> | <u>9</u>  | -1  |
| ·            | ·         | ·         |     |
| ·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3항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계                  | <u>101</u> | <u>96</u> | -5  |
| 1. 공무원              |            |           |     |
|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 <u>100</u> | <u>95</u> | -5  |
| 일반직 계               | <u>100</u> | <u>95</u> | -5  |
| .                   | .          | .         |     |
| .                   |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u>4</u>   | <u>3</u>  | -1  |
| 행정사무관               | <u>9</u>   | <u>8</u>  | -1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                | <u>26</u>  | <u>23</u> | -3  |
| .                   | .          | .         |     |
| .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남북출입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계                     | <u>30</u> | <u>25</u> | -5  |
| 일반직 계                  | <u>30</u> | <u>25</u> | -5  |
| ·                      | ·         | ·         |     |
| 서기관                    | <u>2</u>  | <u>1</u>  | -1  |
| ·                      | ·         | ·         |     |
| 행정사무관                  | <u>5</u>  | <u>4</u>  | -1  |
| ·                      | ·         | ·         |     |
| 행정주사                   | <u>4</u>  | <u>3</u>  | -1  |
| ·                      | ·         | ·         |     |
|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br>방송통신주사 | <u>3</u>  | <u>2</u>  | -1  |
| ·                      | ·         | ·         |     |
| ·                      | ·         | ·         |     |
| 행정서기보                  | <u>2</u>  | <u>1</u>  | -1  |
| ·                      | ·         | ·         |     |
| ·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9항 본문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계           | <u>27</u> | <u>22</u> | -5  |
| 일반직 계        | <u>27</u> | <u>22</u> | -5  |
| ·            |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u>2</u>  | <u>1</u>  | -1  |
| 행정사무관        | <u>2</u>  | <u>1</u>  | -1  |
| ·            | ·         | ·         |     |
| 행정주사         | <u>7</u>  | <u>6</u>  | -1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보        | <u>8</u>  | <u>6</u>  | -2  |
| ·            | ·         | ·         |     |
| ·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9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계           | <u>28</u> | <u>23</u> | -5  |
| 일반직 계        | <u>28</u> | <u>23</u> | -5  |
| ·            |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u>2</u>  | <u>1</u>  | -1  |
| 행정사무관        | <u>2</u>  | <u>1</u>  | -1  |
| ·            | ·         | ·         |     |
| 행정주사         | <u>7</u>  | <u>6</u>  | -1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보        | <u>9</u>  | <u>7</u>  | -2  |
| ·            | ·         | ·         |     |
| ·            | ·         | ·         |     |